

예비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번호
682

2025. 4. 18.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4.(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상정)2025. 4. 16. ~ 18. / (의결)2025. 4. 18.

2. 예산안 규모

○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별(일반+특별회계) 규모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총계	521,427,202	453,136,099	68,291,103	15.07%
일반회계	320,043,855	287,052,602	32,991,253	11.49%
특별회계	201,383,347	166,083,497	35,299,850	21.25%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531억 3,609만 9천원에서 15.07% 증가한 5,214억 2,720만 2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안의 21.39%에 해당함.

-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08억 3,754만 8천 원 보다 2.36% 증가한 520억 3,593만 6천 원이며, 남양주시 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 3억,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7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626억 2,403만 4천 원 보다 10.59% 증가한 1,798억 4,834만 4천 원이며,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67억 38만 6천 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31억 3,756만 8천 원, 대광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정지원 13억 1,575만 원, 진접읍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오남초 통학로 개설공사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6,458만 7천 원 보다 41.21% 증가한 157억 6,595만 5천 원이며, 도시계획도로(중로3-339호선) 개설공사 5억 원,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사업 4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04억 1,982만 7천 원보다 7.59% 증가한 327억 2,780만 2천 원이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10억 5,560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3억 331만 1천 원, 선택형맞춤농정사업 2억 7,5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20억 660만 6천 원보다 23.93% 증가한 396억 6,581만 8천 원이며,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8억 원, 별내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 5억 원, 관내 노후 인도정비 5억 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도로 설해대책 추진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별 예산은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1억 2,314만 3천 원이며, 세출 예산간 조정에 따라 예산규모 변동은 없음.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4억 2,868만 4천 원보다 27.22% 증가한 221억 7,279만 원이며,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 7천만 원, 와부읍 팔당2리 공영주차장 조성 4억 9,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 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보고 요지

○ 교통국 예산안

(단위:천원)

소관	사 업 명(부기)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비고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도로정비	500,000	△250,000	250,000	
378 / 636	별내로데오거리 일원 도로정비사업 (401-01)	500,000	△250,000	250,000	

- 본 예산안은 사업의 내용을 따져보았을 때 그 타당성과 필요성, 긴급성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일부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